

산업안전 Q&A

Q

노동부 고시 2002-15호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토록 한 기준에 의거 2002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외 금액은 2003년도 계약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2003년도 안전관리비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도록 사용하였다면 장기계속공사에서 200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2003년도에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한지요?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중간정산 시점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나, 연차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집행하도록 규정하고있기에 미집행(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처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의 취업이 많으며, 2-3일 또는 1주일 정도의 단기근무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신규채용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1) 상기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하루이틀 투입이 되는 작업자도 모두 신규채용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2) 1)의 질문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을 두고 부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작업자의 경우(예 2~3일 투입된 후 1주일 후에 다시 투입) 투입될 때마다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3) 2)의 질문이 아니면 최초 투입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단서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건상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건강장애의 종류에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추가하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예방조치가 필요한 작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②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
- ③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발생시 회사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 ④ 규정을 어길 경우 벌칙은 무엇인지?

※ 참고사항

- 사무직 :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PC로 업무를 본다고 보면 됩니다.
- 연구직 :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은 더 많습니다.
- 생산직 : 단순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2개월 정도 단순작업을 합니다.
- 영업직, AS직 : PC앞에 오래있지는 않지만, 운전을 많이 합니다.



① 귀사의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직원이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 입력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면 예방조치가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영업직, AS직 직원이 장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운전을 한다면 예방조치가 필요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기타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의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실시, 건강진단 실시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관리 등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법이 정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